

정책자금상담센터 컨설팅 안내



중소기업 정책자금

■ 정의

우리나라 산업기반을 이루고 그 핵심역할을 하게 될 중소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국제경쟁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 규모

3.0조

■ 용자한도 및 금리

용자한도

· 개별기업당 용자한도는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의 용자잔액 기준으로 45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50억원)까지이며, 매출액의 150%이내에서 지원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변동금리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자금의 경우 각 사업별로 고정금리를 적용할 수 있음.

■ 용자신청 / 접수 및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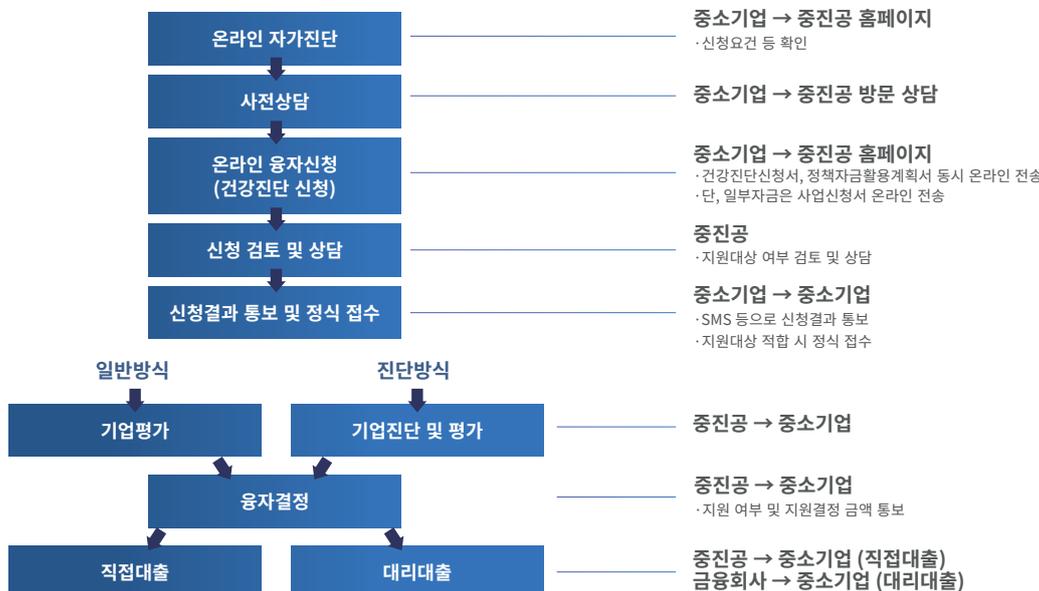
접수시기 예외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 신청 불가
- 재도약지원자금 중 재창업자금은 매 격월별(5월, 7월, 9월, 11월) 접수

다음에 해당하는 자금은 월별 구분없이 신청·접수하여 운영

- 투융자복합금융자금(성장공유형 대출, 프로젝트금융형 대출 - 프로젝트금융형 대출은 접수시기 별도 공지)
- 신성장기반자금(협동화 및 협업사업, 고성장(가젤형)기업지원자금)
- 재도약지원자금(사업전환, 무역조정, 구조개선전용)
- 재해중소기업, 일시적경영애로기업, 사회적기업 및 건강진단에 따른 중진공 또는 중소기업청 건강관리위원회의 정책자금 연계 추천서 발급기업
- 긴급경영안정(일시적애로) 중 메르스 피해 중소기업·의원 및 기업 지원은 9.15까지 접수

용자 체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 용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의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우선지원)

- 전략산업 : 녹색·신성장동력산업, 뿌리산업, 부품·소재산업, 지역
- 전략·연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바이오산업,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 물류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전략산업 이외의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 주된 사업의 업종이 용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거나 자금별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자대상에서 제외

■ 용자 제한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의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우선지원)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은 용자대상에 포함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용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용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다만,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용자대상에 포함
-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인 CR1등급(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및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 10억원 미만의 소자산기업은 예외), 신용평가회사의 BB 이상 등급인 기업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또는 최근 2년 이내 자체 신용으로 공모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단, 신성장기반자금은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기업)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1,000억원 초과 기업
신성장기반자금 중 고성장(가젤형)기업전용자금은 신용평가회사 BBB까지, 매출액 1,000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 1,000억원 초과기업 지원 가능
- 업종별 용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기업
(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승인 신청 시 기준 단, 다음의 경우에는 부채비율 기준 적용을 배제)
업력 5년 미만 기업, 사업전환자금 신청기업 중 무역조정지원기업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대상사업자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기업 중 일시적경영애로기업, 재해 중소기업
재도약자금 중 구조개선전용자금 지원기업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소공인특화자금 신청기업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대비 R&D투자비율이 1.5% 이상인 기업의 R&D금액 등은 용자제한 부채비율 산정시 제외)
- 용자 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및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2년 연속 매출액이 50%이상 감소한 기업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0 미만'이고,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인 기업
최근 3개월 내 연체일수 45일 이상 또는 10일 이상이 4회 이상인 기업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CR6) 등급 (재도약지원자금 중 재창업자금 및 구조개선전용자금 적용 제외)
- 용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신청연도가 다르거나 재도약지원자금(사업전환, 무역조정, 구조개선전용), 재해자금은 신청가능)
- 용자 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이상 법인기업 중 정부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정책자금(소상공인지원자금 제외) 지원실적이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을 통해 지원실적 확인)
시설자금 : 시설자금 대출잔액 45억원(비수도권은 50억원) 이상 (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실천계획 승인 시에 해당여부를 판단)
운전자금 :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지원기업 단, 재해중소기업,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수출금융지원자금,사업전환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성장공유형 대출)은 지원실적 대상에서 제외

중소기업 정책자금

■ 용자절차

상담 및
신청접수

기업평가

지원결정
통보

자금대출

■ 이의제기 절차

개요

· 정책자금 신청업체 중 사업타당성 평가 결과, 탈락한 업체의 이의제기에 대한 재심기회 부여

재심대상

· 기술·사업성 평가 결과, 지원 제외된 기업

재심절차

재심신청

재심위원회
심의

재심결과
통보